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4. 12. 17.(화) 11:00
(지 면) 2024. 12. 17.(화) 석간

전북특별자치도,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 구체화 기반 마련

- 「전북특별법」 위임사항을 담은 「전북특별법 시행령」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

- 행정안전부는 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(이하 ‘시행령’)」 제정안이 12월 17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
- 시행령 제정안은 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전부개정(’23.12.26.)에 따라 시행일(’24.12.27.)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(개발종합계획 수립)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‘글로벌생명경제도시’ 조성에 관한 중장기(10년)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·방법 등을 규정했다.
 - (국제케이팝학교 지원) 국제케이팝학교 설립·운영에 필요한 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초기 운영비, 시설 건축비 등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.
 - (산악관광진흥지구 내 특례)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「산지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,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사업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.
 - (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)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 업종을 지역전략산업 등을 고려하여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등으로 규정했다.
 - (환경분야 특례 성과평가) 환경부 장관이 평가하는 환경분야 특례 운영 성과평가 관련, 평가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해야 하는 사항(기본방향·절차 등), 평가단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,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평가 관련 세부 절차·방법을 규정했다.

-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“시행령 제정으로 특례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라며,
- “앞으로도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	책임자	과 장	성현모 (044-205-3301)
		담당자	사무관	유상근 (044-205-3339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종합계획 수립 (§14~16)

- (법률 내용) 개발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수립 절차 및 방법 위임

⇒ (시행령 규정) 개발종합계획의 수립(10년) 및 재검토 주기(5년), 고시 방법(일간 신문·공보 등) 및 일반인 열람 기간(14일) 등

② 국제케이팝학교(외국인 학교) 지원 (§17)

- (법률 내용) 국제케이팝학교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지원 절차 등 위임

⇒ (시행령 규정) 자금지원 절차(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학교장 → 도지사 신청) 및 초기 운영비, 시설의 건축비 등 지원 근거 마련

③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·운영 (§18~21)

- (법률 내용) 산악관광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, 「산지관리법」 (§12, §18) 등에도 불구하고 ‘산악관광진흥지구’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 등을 위임

⇒ (시행령 규정) 산악관광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(한국토지주택 공사 등 11개 기관) 명시 및 「산지관리법」, 「백두대간법」상 특례* 규정

* ①진흥지구 개발계획 내 포함된 관광시설 설치허용, ②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(사업추진이 가능한 평균경사도 15~25→35도 이하 등), ③산림레포츠시설 설치허용

④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·운영 (§23~24)

- (법률 내용) 진흥지구 지정시 요구되는 투자기준(업종 등) 위임

⇒ (시행령 규정) 지역전략산업 등을 고려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, 항공 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등 투자 대상업종 규정 등

⑤ 환경 분야 특례 성과평가 방법·절차 (§25)

- (법률 내용) 한시적(3년)으로 부여한 환경 분야 특례(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이양 등)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방법과 절차를 위임

⇒ (시행령 규정) ①평가단 구성(외부 전문가 등) → ②도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현장점검 → ③특례 연장 등 의견통보(존속기한 만료 3개월 전)